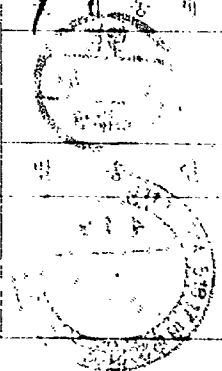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주개30321- 144	(전화: 731-6392)	시행 특별회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관	준영구	89.9.19 중정 15-12		
시행일자	89.9.	7th 9/12		
보조 기관	건설관리국장 전결	협 조 기 관	법무담당관 (고시안심사) 협조통제관	
	주택개발과장			
	개발2계장			
기안책임자	임계호(최완기)			
경유 수신 침조	각안참조	발신 번호의	시 장	
제 목	도시계획(주택개발제한개발구역) 변경결정 고시			
(제 1 안) 내부결재				
1. 건설부고시 제55호(81.2.20)로 구역결정된 홍제제11 주택개발				
제한개발구역에 대하여 시장방침 제1741호(89.9.9)로 구역일부수상된 내용을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와				
도시제한개발법 시행령 제58조(권한의 위임)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관보에				
고시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하오니 제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고시안 1부			
	2. 주택개발제한개발구역 변경결정 도시 1부			
(제 2 안)				



2517

수신	총무처장관
제목	관보게제의뢰
아래와 같이 관보게제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게재구분 : 고시	
2. 게재건명 : 도시계획(주택개량제개발구역) 변경결정	
3. 법규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첨부	1. 고시문 사본 2부.
(제 3 안)	
수신	건설부장관
참조	도시개발과장
제목	도시계획(주택개량제개발구역) 변경결정고시 (보고)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용제세11 주택개량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계획법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하였기 그 처리내용을 보고합	
니다.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주택개량제개발구역 변경결정 도시 1부.	
(제 4 안)	

수신 서대문구청장

참조 주택과장

제목 도시계획 (주택개량제개발구역) 변경결정 고시 (통보)

1. 용제제11 주택개량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및 도시
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고시하였기 그 내용을 통보하니

2.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증명발급등 도시계획 관련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

첨부 1. 고시본 사본 3부

2. 주택개량제개발구역 변경결정 도서 3부.

(제 5 안) 1/2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도시계획 (주택개량제개발구역) 변경결정 고시 (통보)

1. 용제제11 주택개량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및
도시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 내용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하였기
통보합니다.

첨부 1. 고시본 사본 1부

2. 주택개량제개발구역 변경결정 도서 1부. 끝.

수신처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공원과장**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3 호

도시계획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

1. 건설부고시 제55호(81.2.20)로 구역결정된 홍제제11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은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서대문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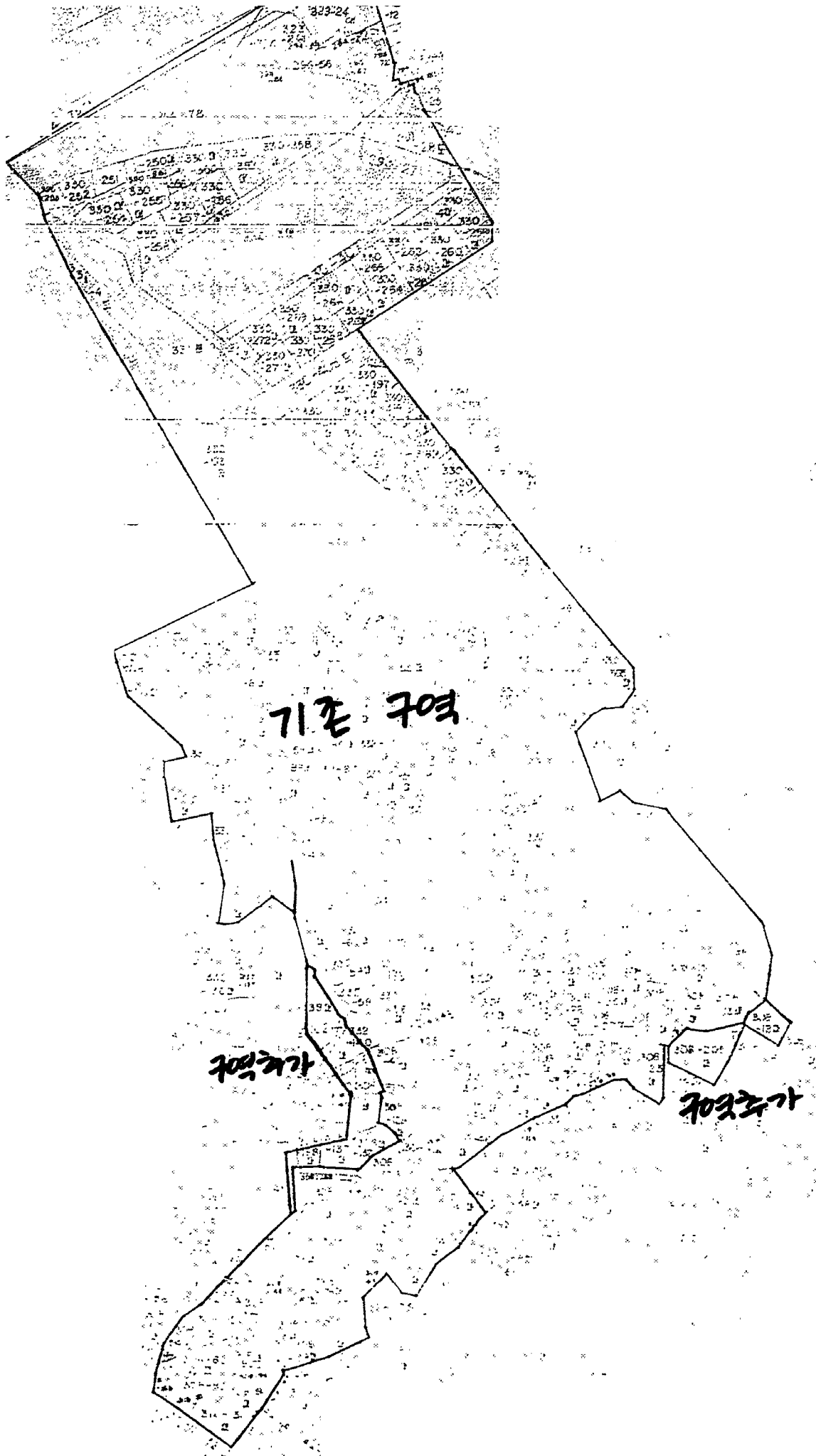
1989. 9. .

서울특별시장

가.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변경결정 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홍제제11	서대문구 홍제1동 330번지일대	31,933	879	32,812	일부추가

나.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관할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주먹짜개량 재개발 구역	31.933
()	879
	32.812